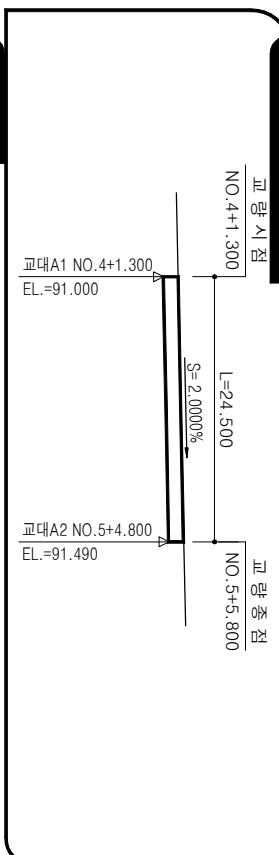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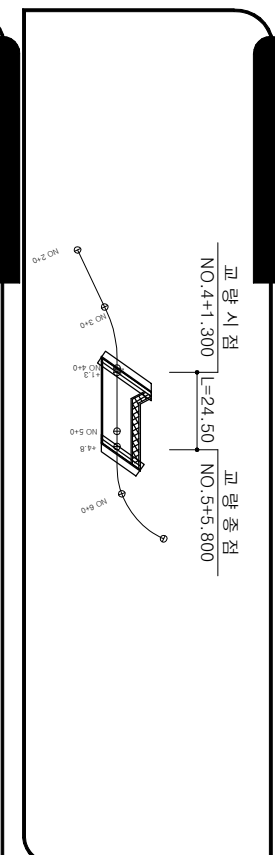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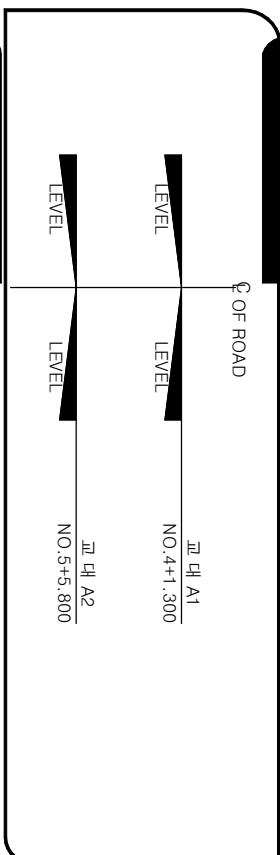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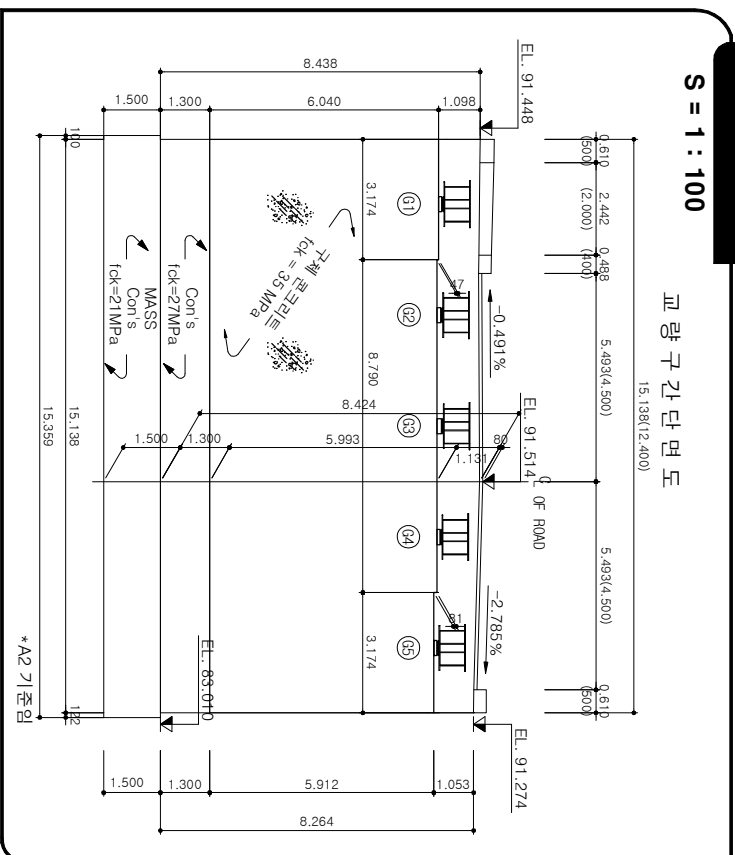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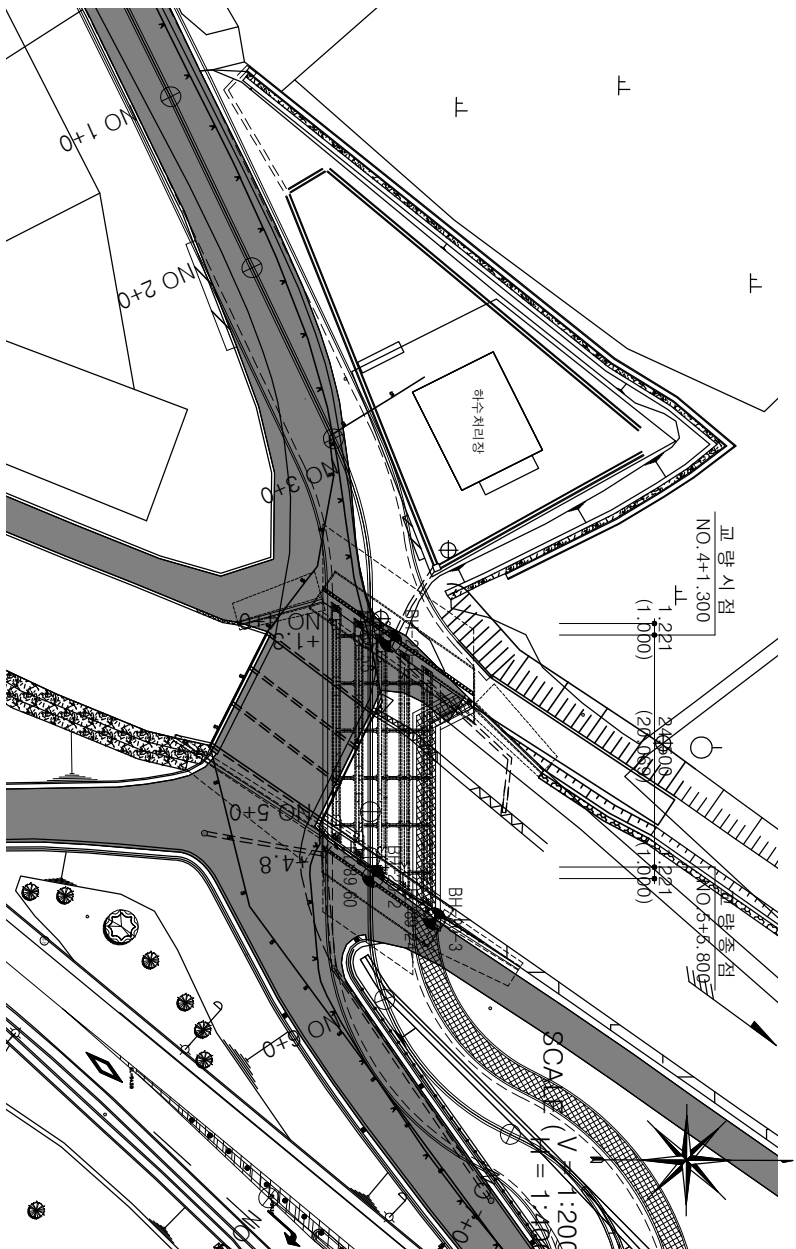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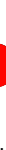


(이하 4표)



종단선영	성토고	전토고	계곡	지반고	누가거리	비점
S=3.9390% H=1.57L=40.00	No. 2	40.00	89.02	89.79		
	No. 3	60.00	89.31	90.53		
	+10.00	70.00	89.52	90.77		
S=2.0000% H=1.20L=60.00	No. 4	80.00	89.57	90.97		
	+1.30	81.30	89.57	91.00		
	+7.40	87.40	89.63	91.12		
	+7.70	87.70	86.60	91.13		
	+12.30	92.30	86.60	91.22		
	+12.50	92.50	85.82	91.22		
S=5.2171% H=1.83L=35.00	No. 5	100.00	85.62	91.37		
	+4.10	104.10	85.54	91.46		
	+4.80	104.80	87.44	91.47		
	+5.60	105.60	89.62	91.49		
	+13.20	113.20	90.10	91.64		
No. 6	120.00	90.97	91.84			
No. 7	140.00	90.45	92.82			

공 사 명	시 행 장	공 역 회 사	축 적	설 계 일 자	설 계 자			도 면 명	도 면 번 호
					과 장 책임 자	문 이 별 책임 자	설 계 자		
하강소하천(하강4교) 정비사업	 김 천 시 (GIMCHON-31)	 (주) 진 성 이 앤 세	V = 1:200 H = 1:400	2026.	나 경 환 	이 성 열 	오 승 원 	교량중평면도 (하강4교)	-

- 1 도면의 모든 치수는 mm단위이다.
 - 2 종단계획교상의 E.L.값은 교량 교면구조층 상단으로 횡단면도 E.L. 표기위치에 대한 E.L.이다.
 - 3 종단면도상의 치수는 도로 중심에 대한 치수이다.
 - 4 모든 구조물은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.
 - 5 확인측량은 매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하며,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물의 위치 및 E.L.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6 모든 기초의 심도는 지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초의 시공계획 수립시 지지층의 상태를 조사한 후 지지조건이 설계도와 상이할 경우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.
 - 7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지하수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침수와 물푸기를 하여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하여야 한다.
 - 8 기초조각사시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.
 - 9 교량의 뒤통물은 교량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방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.
 - 10 교대전면에는 수축균열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11 콘크리트 타설 순서는 시공전 검토 후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.
 - 12 신축이음 장치 및 교량받침은 설계도에 준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구역, 종류 등이 변경되었을 시는 세부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변경 하여야 한다.
 - 13 교량받침 시공시 좌표를 확인후 시공하며, 변경시 이에 따른 E.L.을 다시 한번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.
 - 14 종단선형 및 평면선형에 대한 상세는 보고서의 선형개선서를 참조하여야 한다.
 - 15 지반이나 사상의 동행이 있는 곳에는 슬래브 시공시 낙하물 방지공을 필수 설치하여야 한다.
 - 16 가설면인 경우 가시설물(가시설, 동바리, 기도, 축도, Bent 등)은 기본 설계 개념이므로 시공전 현장 여건에 맞게 세부 설계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 후 변경하여야 한다.
 - 17 신축이음장치의 상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.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되는 지점의 방호울타리는 신축기간과 동일한 간격으로 절단하여야 한다.
 - 18 콘크리트 부재 단면이 두꺼운 경우 타설 전 충분한 온도 균열제어 방안을 검토 후 시공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19 공법상 특기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변경 시행할 수 있다.
 - 20 시공사는 설계도에 의한 구조물들을 현장 여건에 맞게 축조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 후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.
 - 21 교량 시공 중에는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22 교량상부 보강법상의 규정에 따라 시공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23 빈 거치시 전도 및 횡방향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.
- * 상수도관로 및 지하매설물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

- 1 본 교량은 하천 하강편을 횡단하는 단경간 합성철면교 교량이다.
- 2 교량 연장은 하강편(=19.0m) 횡단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.
- 3 상부 시공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합성형 거다교를 가설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시공에 시공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.

- 1 본 교량은 한계상태 설계법에 의해 설계되었음.
- 2 본교량은 적용하중을 한계상태설계법 2등급 ($K_L=382.5kN$)으로 설계되었음.
- 3 본 교량에 사용하 재료 강도는
 $CON C : f_{ck} = 40MPa$ (하부케이싱)
 $f_{tk} = 35MPa$ (라멘슬래브, 라멘구체, 접속슬래브)
 $f_{tk} = 27MPa$ (라멘기초)
 $f_{tk} = 18MPa$ (버릴CON C)
 $철근 : SD 40$ (본체, 접속슬래브)
강재 : SM 420B (가다)
- 4 도면상 다른 포장 상단치수임.
- 5 기초는 현장 지반조사에 의한 암반선이나 도면과 상이할 시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 변경하여야 함다.
- 6 구조를 모서리에는 모따기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.